

## 이 주 민 인 권 선 언 문

-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 및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

### Declaration of Migrants'

### Human Rights

; In celeb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Migrants Day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 있던지 이들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이 존중되어야 함을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 및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As stipulating clearly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48 an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by the UN General Assembly on 18 December 1990, We declare fundamental rights and dignity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shall be respected in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Migrants Day.

1. 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이주민은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의 차별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

All migrant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ll migrants are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 as a human being, and these rights and freedom shall be exercised without discrimination such as race, nationality, sex, language, religion or legal status.

2. 모든 이주민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언어, 체류 자격을 이유로 타인에게 예속되거나 기본적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All migrants shall not be held in servitude and their rights shall not be restricted on the basis of the race, nationality, sex, language, religion or legal status.

3. 모든 이주민은 문화적 주체로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문화나 사상을 받아들일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All migrants are entitled to the right to culture as a cultural subject, they shall not be forced to adopt certain culture or thought against their own will.

4. 모든 이주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고, 경험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All migrants, as a member of society, have the right to know and opportunity to experience culture and society which they migrate.

5. 모든 이주민은 이주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주민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체류할 권리를 갖는다.

All migrants have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the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For granting that, all migrants have the right to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and the right to stay till the time tribunals rule.

6. 모든 이주민은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No migrants shall not be arbitrary arrested, detained or exiled.

7. 모든 이주민은 한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All migrants have the right to leave a country and to return.

8. 모든 이주민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유입국 정부는 박해를 피해 이주한 이주민이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All migrants have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The host country have the obligation to guarantee migrants who migrate from persecution fundamental freedom and right.

9. 모든 이주민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유입국 정부는 이주민에게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할 것을 강요하거나, 귀화하지 않은 이주민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등록이주민의 자녀가 무국적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All migrants have the right to a nationality. They shall not be forced to give up nationality or naturalize by a host country. Also migrants who do not naturalize shall not be get disadvantages by a host country and children of undocumented migrants shall not be the stateless.

10. 모든 이주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인종, 국적, 성별, 체류 자격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All migrants, as a member of society, have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including health insurance etc, This right shall not be restricted on the basis on race, nationality, sex, language, religion or legal status.

11. 모든 이주민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노동권을 갖는다.

All migrants have equal labor rights as they work in equal.

12. 모든 이주민은 직장 이동의 자유를 갖으며, 이 자유는 인종, 국적, 성별, 체류자격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All migrants have the freedom to move their workplaces, the freedom shall not be restricted on race, nationality, sex, language, religion or legal status.

13. 모든 이주 아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All migrant children, as a member of society, have the right to all necessary support for their care and development.

14. 모든 이주 아동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갖으며, 이 권리는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All migrant children have the right to education, this right shall be guaranteed to all migrant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or their parents' legal status.

2008. 12.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